
2022년 SW공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사업

신규과제 공모 안내서

2022. 2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Ministry of Science and ICT



정보통신산업진흥원
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

목 차

I. 사업 개요	1
II. 지원내용 및 조건	4
III. 과제 신청 및 접수	9
IV. 과제 선정 방안	11
V. 사업관리 방안	17
VI. 기타 유의사항	18



□ 추진배경

- 기업의 SW생산성·제품품질 향상 및 글로벌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SW공학기술 도입 및 내재화 필요
- 신SW산업의 발전과 SW의 적용분야 확대에 따라 SW공학기술의 선도적 적용으로 관련 기술과 서비스 경쟁력 확보 가능성 제기
- 글로벌 산업표준, 고객사 규격요건 강화 등에 따라 글로벌 SW표준 및 고신뢰 SW기술에 대한 적용 사례 확보 및 전파 필요

□ 추진방향

- SW시장 변화에 따라 SW공학기술 적용사례의 보급·확산을 위한 대상 산업군 확대와 기술 역량 내재화 체계 개선
- SW공학기술 적용 선도사례, 우수사례 등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 강화
- 수행기업 주도 사업수행 체계 구축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 비즈니스 가치와 SW공학과의 연계 가시화*

* 수행기업 상황에 따라 적합한 SW공학기술을 적용하고 전체 수행과정에서 비즈니스 관점(비즈니스 이슈해결, 기업 경쟁력, 신사업 창출)의 연계성 제시

⇒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비즈니스 현안을 SW공학기술 도입·적용·내재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기업의 SW 품질경쟁력을 강화

□ 관련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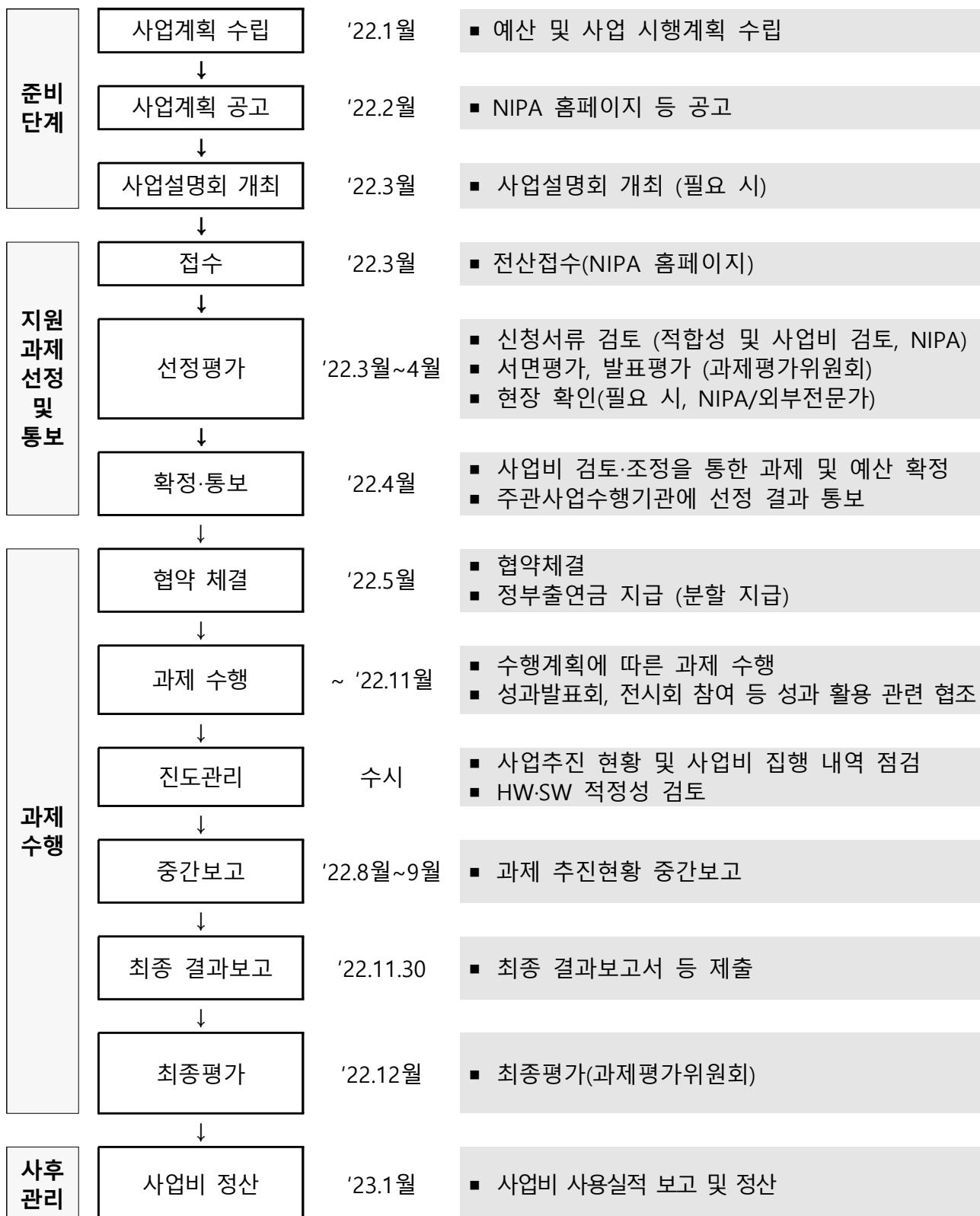
-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 규정(2022년 1월 14일 개정) 및 관련 지침

□ 추진 체계 및 역할



구 분	주요 역할
과학기술정보통신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사업추진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○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
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 (전담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○ 세부 과제 공모 및 협약○ 과제관리, 예산집행 및 정산, 성과평가○ 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
사업비검토·조정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과제 범위,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○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
과제평가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과제 선정평가 등
사업수행기관 (컨소시엄) (수행기업(주관사업수행기관)) / 컨설팅기관(사업수행기관)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○ 과제 진행 및 현황·결과 보고○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

□ 사업 추진절차



*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가. 지원사업 개요

구분	SW공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사업
공모방식	자유공모
공모분야	①신성장동력 분야, ②시스템SW 분야, ③경쟁력강화(일반) 분야
지원대상	국내 중소·중견기업과 컨설팅기관 간 컨소시엄
지원기간	협약체결일 ~ 2023.11.30. (최대 2년) (1차년도 사업 수행 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)
지원예산 및 규모	(1차년도) 14.3억원 내외 (11개 과제 내외)
지원조건	총사업비의 75%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(민간부담금 25% 이상)
지원내용	기업의 당면한 비즈니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SW공학기술 도입 및 적용, 내재화 비용 지원

나. 세부 내용

공모방식 : 자유공모

공모분야 : ①신성장동력 분야, ②시스템SW 분야, ③경쟁력강화(일반) 분야

공모분야	과제 제안 요건	주요 선정 기준
신성장 동력 분야	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SW신기술과 SW공학기술의 혁신적 도입	(선도적용 파급효과) SW공학기술 도입의 혁신성과 도입에 따른 산업계 등 파급효과
시스템SW 분야	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해 SW공학 및 SW안전 기술 적용	(기업성장 및 보급효과) SW공학기술 도입을 통한 기업의 성장 효과 및 SW안전기술 활용 효과
경쟁력 강화(일반) 분야	기업의 당면 이슈 해결 및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해 SW공학기술 적용	(비즈니스 성과) 비즈니스 이슈와 도입 예정인 SW공학기술의 적절성과 문제 해결을 통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

□ 지원 대상

○ 국내 중소·중견기업(수행기업)과 컨설팅기관 간 컨소시엄

-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)에 따른 기업을 말함
-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
- 컨설팅기관 : SW공학 전문역량 및 컨설팅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으로 대학, 연구기관, 전문컨설팅 기업 등을 말함

※ 수행기업과 컨설팅기관은 총 1건만 신청 가능 (복수 지원 불가)

※ 2021년 SW공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사업 수행기업은 신청 불가

□ 지원 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3.11.30. (최대 2년)

※ 1차년도 사업 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2.11.30.

※ 2차년도 사업 기간 : 2023.2.1. ~ 2023.11.30.

※ 1차년도 사업 수행 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

□ 1차년도 지원 예산 및 규모 : 14.3억원 내외 (11개 과제 내외)

공모분야	선정과제 수	세부 공모분야	분야별 선정기준
신성장 동력 분야	4개 내외 (연간 최대 1.3억)	- AI - 빅데이터 - 클라우드 - VR/AR - 블록체인	- 분야 내에서 평가 점수순으로 선정 하되 세부 공모분야별로 최대 2개 과제 선정 - 과제 특성에 따라 필요시 <u>SW안전 기술활용서*</u> 적용 권고 * www.sw-safety.co.kr
시스템SW 분야	4개 내외 (연간 최대 1.3억)	- 자동차 - 철도 - 항공 - 의료 - 제조 / 기계 - 산업일반	- 분야 내에서 평가 점수순으로 선정 하되 세부 공모분야별로 최대 2개 과제 선정 - SW안전기술활용서* 적용 필수 * www.sw-safety.co.kr
경쟁력 강화(일반) 분야	3개 내외 (연간 최대 1.3억)	- 없음	- 세부 공모분야 구분 없음

※ 1차년도 사업비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컨소시엄별 차등지급될 수 있음

※ 2차년도 사업비 지원규모는 지원사업 기본계획의 변경, 예산확보 규모, 1차년도 평가
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사업비 검토·조정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과제의 범위 및 사업비 등이 최종 조정될 수 있음

□ 지원 조건

- (민간 매칭)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을 부담하여야 함

◎ 총사업비 = 정부출연금 + 민간부담금 (현금 + 현물)

- * 정부출연금 : 수행기관(컨소시엄)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
- * 민간부담금 : 수행기관(컨소시엄)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

- 총사업비 내 민간부담금 비중은 수행기업 유형에 상관없이 25% 이상 유지 (민간부담금은 수행기업에서 부담)
- 민간부담금 현금/현물 비율은 제한 없음 (현물만으로 구성 가능)
- 민간부담금 중 현물의 경우 인건비로만 계상 가능
-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내 수행기업과 컨설팅 기관 간 사업비는 50:50 비율을 유지할 것을 권고

※ (예시) 수행기업(민간부담금(총사업비의 25%) + 정부출연금(총사업비의 25%)) : 컨설팅 기관(정부출연금(총사업비의 50%))

- (SP인증) SP인증 신청 가산점을 받은 수행기업은 1차년도 사업 종료 후 18개월 이내에 SP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

※ 해당 수행기업은 협약 시 SP인증 심사비용(일천만원)에 대한 이행보증보험(기간 : 1차년도 사업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8개월+60일)을 협약 시 제출해야 함

- (SW공학수준조사) 수행기업은 사업 착수시점과 종료시점, 사업종료 후 5년간 SW공학수준조사에 참여해야 함

- (성과 확산) SW공학 적용사례의 성과 확산을 위해 수행기업은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해야 함 (컨퍼런스, 워크숍, 세미나, 인터뷰 등)

- (결과물 활용)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, 시설 및 시작품, 지적 재산권,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업이 소유

- 사업 종료 후, 결과보고서 등 결과물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될 수 있음

※ 공개되는 내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전 상호 협의함

- (사업비 집행)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서버 등 장비 구입에 앞서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

- (기술료) 해당사항 없음

□ 지원 내용

- 당면한 비즈니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SW공학기술의 도입과 적용, 내재화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 (최대 2년)
 - * (1차년도) SW공학기술 도입·적용 → (2차년도) 개선 및 내재화를 지원
 - * 사업 신청 시, 1·2차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제출해야 함
- **(1차년도)**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식별, SW공학기술 도입, 시범적용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등을 수행
 - **(현황분석)** SW개발·품질체계와 환경(도구 포함)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현안이 되는 주요 문제를 식별
 - **(도입/적용)** 식별된 문제해결을 위해 SW공학기술을 도입 (교육, 도구, 가이드 등 포함)하고, 이를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
 - **(개선사항 도출)** SW공학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
- **(2차년도)** 1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 활동과 내재화를 추진하며, 전체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수행
 - * 1차년도 최종보고서 제출 시, 2차년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재제출해야 함
 - **(개선)**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활동을 통해 SW개발·품질체계의 재정립 추진
 - **(내재화)** 수행기업의 SW공학기술 적용 사업의 확대 및 내재화를 위한 활동 추진
 - **(성과분석)** 1·2차년도 SW공학기술 적용 성과에 대한 분석

□ 지원 제외 대상

-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(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)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(기업), 대표자, 총괄책임자
 - 기업의 부도
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)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다만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해당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- 가. 대표이사가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
 - 나.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 잠식이 아닌 경우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 -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
 -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-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
 - 타기관의 IPR(지식재산권)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 -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 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
 -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 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
 -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 -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

사업계획(신청)서 전산 접수 안내

- 사업계획(신청)서 다운로드 후 작성
 - NIPA 홈페이지(www.nipa.kr) 사업공고 → '22년 SW공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→ '22년 SW공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서식'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전산접수로 신청
- 전산 접수 마감시한 : **2022. 3. 23(수) 15:00 까지**
 - * 전산 접수 마감시한일 20일 전부터 전산접수 가능
 - 정보통신산업진흥원(www.nipa.kr) 홈페이지 하단(기관 바로가기) → 행정지원 → SMART(사업성과관리시스템) → 총괄책임자 회원 가입 및 로그인 → 전산접수

사업계획(신청)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

<사업계획(신청)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>

- 사업계획(신청)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주관사업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
 -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, 입력내용은 사업계획(신청)서와 동일하게 작성
 - 전산 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 절차 및 사업 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전산 접수 진행
 - 전산 접수는 사업계획(신청)서 최종본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, **최종 '제출'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 '제출'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**
 (*반드시 별첨의 "전산 접수 매뉴얼"을 숙지)
- ※ **마감시한 이후엔 접수가 불가하며,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~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**
- ※ 전산 시스템 문의 : ☎ 070-5151-8239

- 전산접수 오류방지 및 테스트를 위해 마감일 7일전~2일전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작성 및 업로드 하면서 계속 “저장” 및 “제출”을 클릭

< 시스템 입력요령 >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입력 내용이 자동 저장되지 않으므로 내용 작성 중 수시로 “저장” 버튼을 클릭 ② 마감당일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접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매 저장 후 반드시 “제출” 버튼을 클릭하여 대비 (<u>제출버튼 클릭 후 제출하겠냐는 팝업창까지 다시 클릭해야 제출됨</u>) ③ “제출” 버튼을 클릭해도 마감시간까지는 <u>계속 수정제출 가능</u> ④ 마감시간 경과 후에는 “제출” 불가 <p>※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,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감시간 내 제출에 실패할 수 있음</p> <p>※ <u>신청페이지에서는 “제출” 버튼을 클릭하였더라도, SMART 시스템 상에 최종 제출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제출로 인정되지 않음</u></p> |
|---|

□ 제출서류 : 사업계획(신청)서 및 제출서류

- 신청서식의 ‘과제 지원 시 제출서류 목록’ 참조

- ※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**PDF파일**로 전산접수 함 (원본대조필 불필요)
- ※ 제출서류는 먼저 각 주관사업수행기관/사업수행기관별로 ZIP 파일로 압축한 후 모든 기관의 자료를 한번 더 ZIP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
- ※ **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**
- ※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(기관)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□ 문의처

구분	담당자 (이메일)	TEL
지원사업 내용	SW공학기술팀 김민수 수석(kms@nipa.kr) SW공학기술팀 김동하 수석(donghakim@nipa.kr)	043-931-5470 043-931-5472
SP인증 관련 내용	SW공학기술팀 김승권 수석 (sgkim@nipa.kr)	043-931-5461
전산접수 관련 내용	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(smart@nipa.kr)	070-5151-8239

1

선정 절차

- 사업계획(신청)서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, 과제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·발표 평가, 사업비 검토·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

< 선정 절차 개요 >

선정 절차		주체	내용	비고
1단계	적합성 검토	정보통신산업 진흥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 	평가 대상 결정
2단계	서면평가	과제평가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분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	발표평가 대상 선정
	발표평가	과제평가위원회		종합심의 대상 확정
3단계	종합심의	사업비검토·조정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지원과제 확정 	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

- * 평가 및 사업비 검토·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- *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,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2

평가방법 및 평가기준

- 적합성 검토

- (개요) 제출서류의 적정성과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
- (평가대상) 접수과제
- (검토방법) 사업계획(신청)서, 첨부·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 등 NIPA 내부검토
- (검토항목) 신청서류, 사업비 산정, 참여제한(사전지원 제외 대상, 조달청 참여제한 기업), 중복성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검토

- * 적합성 검토 결과, 중대 문제(사전지원 제외 대상, 제출서류 미제출 등)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

□ 서면평가

- (개요)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1차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 평가 대상과제 선정 (* 접수된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)
- (평가대상)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
- (평가방법)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
 -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수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
- * 서면평가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
- (평가위원)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
- (평가기준) 지원효과, 수행역량, 사회적 가치 창출 등 평가
 - * 동점자 발생 시 평가분류와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순위 확정
 - * 위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과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

□ 발표평가

- (개요)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 우선순위 선정 (고득점 순)
- (평가대상)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*
 - * 서면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(각 세부공모 분야별로 최종 지원대상 수의 2배수 이내)
- (평가방법)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
 -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수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
- * 발표평가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,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
- (평가위원)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
- (평가기준) 서면평가 평가기준과 동일

○ 평가 기준 (신성장 동력 분야)

평가분류	평가항목		배점
지원효과 (45점)	o 사업추진 혁신성 - 비즈니스 이슈 해결을 위한 SW공학기술 도입의 혁신성 (참신성) - 문제 해결을 위한 SW공학기술 선정 타당성 - 수행기업 수행 목표(정량적 지표) 구성의 적절성 * 문제점, 해결과정, 수행결과 등 과제수행 전반을 적절히 지표화		20
	o SW공학기술 적용 파급효과 - 적용 사례를 통한 관련 산업 파급효과 (신시장 창출, 산업 활성화) - SW공학기술 적용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		15
	o 글로벌 진출 가능성 - 글로벌 진출 목표 설정 및 타당성 - 향후 글로벌 진출에 있어 본 사업의 활용성 - 수출판로 확보, 인증 등 준비정도		10
수행역량 (35점)	o 수행기업의 사업수행 의지 및 수행 역량 - 전사 차원의 사업수행 의지 및 관련 수행 체계 확보 - SW공학기술 적용 현황 및 수행 가능 역량 확보 - 사업 수행을 위한 적합한 팀 구성 및 지원 가능성, 지속성		10
	o 사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-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- 사업기간 이후 지속적인 유지 가능성		10
	o 조직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 타당성(SP 신청 시)		
사회적 가치창출 (15점)	o 컨설팅 수행계획의 적절성 - 수행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수행계획의 충분성 - SW공학기술 도입·적용을 위한 수행방안 적절성 (교육, 도구활용 등) - 수행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(전문성, 투입계획의 현실성)		15
	o 국내 SW공학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·공유·확산 수행 의지 - 과제 수행 사례의 공유 및 확산 계획의 적절성		10
	o 과제 수행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(공익, 안전, 약자보호 등) - 과제 수행 결과물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 및 가능성		5
일자리 확대 (5점)	고용의 질 개선 실적	o 전년도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유형(정규직 비율 등) 변화, 4대 보험가입률 등 o 기타 고용창출 실적 및 노력	2
	향후 고용 계획	o 본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전략 및 계획 등	3
가산점	o SP인증 신청(2점) o 직전년도 SW품질대상 수상기업(2점)		4
합계			104

○ 평가 기준 (시스템SW 분야)

평가분류	평가 항목		배점
지원효과 (45점)	o 사업추진 필요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즈니스 이슈의 명확성 및 개선 필요성 - 문제 해결을 위한 SW공학, SW안전기술 선정 타당성 - 수행기업 수행 목표(정량적 지표) 구성의 적절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문제점, 해결과정, 수행결과 등 과제수행 전반을 적절히 지표화 	20	20
	o SW공학기술 적용 파급효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용 사례의 관련 산업계 확산 가능성 (일반화 가능성) - SW공학, SW안전기술 적용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 		
	o 글로벌 진출 가능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글로벌 진출 목표 설정 및 타당성 - 향후 글로벌 진출에 있어 본 사업의 활용성 - 수출판로 확보, 인증 등 준비정도 		10
수행역량 (35점)	o 수행기업의 사업수행 의지 및 수행 역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사 차원의 사업수행 의지 및 관련 수행 체계 확보 - SW공학기술 적용 현황 및 수행 가능 역량 확보 - 사업 수행을 위한 적합한 팀 구성 및 지원 가능성, 지속성 	10	10
	o 사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- 사업기간 이후 지속적인 유지 가능성 		
	o 조직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 타당성(SP 신청 시)		
사회적 가치창출 (15점)	o 컨설팅 수행계획의 적절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행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수행계획의 충분성 - SW공학기술 도입·적용을 위한 수행방안 적절성 (교육, 도구활용 등) - 수행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(전문성, 투입계획의 현실성) 	15	15
	o 국내 SW안전기술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·공유·확산 수행 의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 수행 사례의 공유 및 확산 계획의 적절성 		
	o 과제 수행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(공익, 안전, 약자보호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 수행 결과물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 및 가능성 		
일자리 확대 (5점)	고용의 질 개선 실적	o 전년도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유형(정규직, 비율 등) 변화, 4대 보험가입률 등	2
	향후 고용 계획	o 기타 고용창출 실적 및 노력	
가산점	o SP인증 신청(2점) o 직전년도 SW품질대상 수상기업(2점)		4
	합계		
			104

○ 평가 기준 (경쟁력 강화(일반) 분야)

평가분류	평가 항목		배점
지원효과 (45점)	○ 사업추진 필요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즈니스 이슈의 명확성 및 개선 필요성 - 문제 해결을 위한 SW공학기술 선정 타당성 - 수행기업 수행 목표(정량적 지표) 구성의 적절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문제점, 해결과정, 수행결과 등 과제수행 전반을 적절히 지표화 		20
	○ SW공학기술 적용 파급효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용 사례의 관련 산업계 확산 가능성 (일반화 가능성) - SW공학기술, SW품질관리 적용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 		15
	○ 글로벌 진출 가능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글로벌 진출 목표 설정 및 타당성 - 향후 글로벌 진출에 있어 본 사업의 활용성 - 수출판로 확보, 인증 등 준비정도 		10
수행역량 (35점)	○ 수행기업의 사업수행 의지 및 수행 역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사 차원의 사업수행 의지 및 관련 수행 체계 확보 - SW공학기술 적용 현황 및 수행 가능 역량 확보 - 사업 수행을 위한 적합한 팀 구성 및 지원 가능성, 지속성 		10
	○ 사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- 사업기간 이후 지속적인 유지 가능성 		10
	○ 조직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 타당성(SP 신청 시)		
사회적 가치창출 (15점)	○ 컨설팅 수행계획의 적절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행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수행계획의 충분성 - SW공학기술 도입·적용을 위한 수행방안 적절성 (교육, 도구활용 등) - 수행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(전문성, 투입계획의 현실성) 		15
	○ 국내 SW공학, SW품질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·공유·확산 수행 의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 수행 사례의 공유 및 확산 계획의 적절성 		10
	○ 과제 수행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(공익, 안전, 약자보호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 수행 결과물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 및 가능성 		5
일자리 확대 (5점)	고용의 질 개선 실적	○ 전년도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유형(정규직 비율 등) 변화, 4대 보험가입률 등 ○ 기타 고용창출 실적 및 노력	2
	향후 고용 계획	○ 본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전략 및 계획 등	3
가산점	○ SP인증 신청(2점) ○ 직전년도 SW품질대상 수상기업(2점)		4
합계			104

□ 가산점 부여 기준

○ SP인증 신청기업 가산점 부여(2점)

- ※ SP인증 신청기업 가산점은 본 지원사업(舊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사업 포함) 수행기업은 신청 불가 (단, SP 2등급 보유기업이 SP 3등급 도전을 신청하는 경우 1회 추가 신청 가능)
- ※ SP인증 가산점 신청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1조에 의한 「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」 심사를 받아야 함 (1차년도 사업 종료 후 18개월 이내)
- ※ SP인증 가산점 신청기업은 협약 시 SP인증 심사비용(일천만원)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(기간 : 사업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8개월+60일)을 협약 시 제출해야 함
- ※ SP인증 가산점 신청기업은 SP인증심사 준비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월 월간보고시 SP인증심사에 대비한 계획과 진행현황을 보고하고 검토를 받아야 함

○ '21년도 SW품질혁신대상 수상 기업 가산점 부여(2점)

- '21년도 SW품질혁신대상 수상 기업이 본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
- ※ 2021년도 SW품질혁신대상 최우수상, 우수상 기업

□ 종합심의 (사업비 검토·조정)

- (개요) 발표평가 결과(순위) 및 지원 가능 예산을 고려한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
- (심의·조정대상)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
- (심의·조정방법)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별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(안)을 확정한 후, 최종 지원과제 확정
 - * HW 및 SW개발 비용 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도 검토
- (심의·조정위원)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



□ 보고 및 평가

- 사업수행 보고, 현장 실사 및 평가(착수·중간보고, 최종평가)
 - 사업 착수보고,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보고 실시
 -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 현장실사 실시
 - 최종평가 :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“성공” 또는 “실패”로 평가

□ 성과 관리

- 수행기업은 사업 착수시점과 종료시점, 사업종료 후 5년간 SW공학 수준조사에 참여해야 함
-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실행
 - 수행기업은 지금까지 수행한 고용 창출 실적과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수행계획서에 제안해야 함
 - 성과 보고 시, 고용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

□ 사업비 정산

-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(컨설팅 기관도 정산대상임)

□ 관리 시스템

- NIPA SMART 시스템 (<https://smart.nipa.kr>)
 - 사업 지원, 협약, 사업 관리

□ 사업비 편성 시 유의사항

- 민간부담금 의무기준

$$\textcircled{O} \text{ 총사업비} = \text{정부출연금} + \text{민간부담금} (\text{현금} + \text{현물})$$

- 민간부담금 : 정부출연금 외에 주관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또는 현물
- 민간부담금은 의무기준 (총사업비의 25%) 이상 부담하여야 함
- 민간부담금 중 현금과 현물의 부담 비율 기준은 없음
- 민간부담금 중 현물의 경우 인건비로만 계상 가능
- 재료비 성격의 비용 중 소모성 재료는 일반수용비로 산정하고, 장비(SW포함) 등은 자산취득비로 산정
- 각 항목별로 모델, 수량, 단가, 구입처(복수 구입처 제시)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(사업계획서 내 '시설 및 장비도입 계획서' 항목)
-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(PC/노트북, 프린터, 복사기 등) 구입은 지양하고 사업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(임차료에 편성)
 - * 단, 신규인력의 PC/노트북에 한하여 자산취득비로 구입이 가능하며, 구매수량은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 기간에 근거하여 편성
- 운영비(특근매식비, 차량비, 복리후생비, 기타 운영비), 직무수행 경비(직책수행경비),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
-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 비목별 편성한도는 없음
- 컨소시엄 내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 규모는 기관별 역할,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
-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/시스템/서비스 등 모든 거래 불가

- 과제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검토·조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(정부출연금 등)는 축소·조정 및 비목별 추가/변경/삭제 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함
- 모든 사업비는 1차년도 기준으로 먼저 산정하며, 2차년도 사업비는 1차년도 사업비와 동일하게 산정
 - ※ 전산접수 시 SMART 시스템에 입력하는 모든 예산은 1차년도 예산으로만 작성
(예산 입력 시 금액 단위에 주의)
 - 1차년도 사업비 : 기관별/비목별/현금·현물별 세부내용 작성
 - 2차년도 사업비 : 세부내용 작성 불필요, 사업계획서 양식에 의거 기관별/비목별 총계만 작성
 - * 2차년도 사업비 세부내용은 2차년도 계속지원 과제에 한해 작성

□ 사업비 지급 및 관리

- 민간부담금 중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정부출연금을 입금하며, 관련 규정 및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음
-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(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)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(*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)
 - *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,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- 사업수행기관이 타기업·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(장비 구입 포함),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

□ 협약체결

-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
 - *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□ 기 타

- 제출 서류 및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사업 신청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